일본국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

平成19년(2007년) 5월 18일 법률 제51호
최종개정: 平成26년(2014년) 6월 20일 법률 제75호

제1장 총칙 (제1조)
제2장 국민투표의 실시
제1절 총칙 (제2조-제10조)
제2절 국민투표 홍보 협의회 및 국민투표에 관한 주지 (제11조-제19조)
제3절 투표인명부 (제20조-제32조)
제4절 재외투표인명부 (제33조-제46조)
제5절 투표 및 개표 (제47조-제88조)
[**이상은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20호에서 소개**]
제6절 국민투표분회 및 국민투표회 (제89조-제99조)
제7절 국민투표운동 (제100조-제108조)
제8절 벌칙 (제109조-제125조)
제3장 국민투표의 효과 (제126조)
제4장 국민투표 무효 소송 등
제1절 국민투표 무효 소송 (제127조-제134조)
제2절 재투표 및 경정결정 (제135조)
제5장 보칙 (제136조-제150조)
제6장 헌법개정발의를 위한 국회법의 일부 개정 (제151조)
부칙 [**이상은 이번호에서 소개**]

제6절 국민투표분회(分會) 및 국민투표회

(국민투표분회장(分會長))

제89조 ① 국민투표시에 도도부현마다 국민투표분회장을 둔다.

② 국민투표분회장은 국민투표의 투표권을 가지는 자 중에서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임한 자로 한다.

③ 국민투표분회장은 국민투표분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국민투표분회장은 국민투표의 투표권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국민투표분회 입회인)

제90조 제76조는 국민투표분회 입회인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각 개표구의 투표인명부에 등록된 자」는 「국민투표의 투표권을 가지는 자」로,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분회장」으로,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분회장」으로, 동조 제4항 중 「또는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3인에 이르지 않게 된 때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입회인이 국민투표일 이후 3인에 이르지 않게 된 때」는 「, 국민투표분회일까지 3인에 이르지 않게 된 때」로, 「개표소」는 「국민투표분회」로 「개표관리자」는 「, 국민투표분회장」으로, 「그 개표구의 투표인명부에 등록된 자」는 「국민투표의 투표권을 가지는 자」로, 「개표에」는 「국민투표분회에」로,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 혹은 개표관리자」는 「국민투표분회장」으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국민투표분회 개최)

제91조 ① 국민투표분회는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연다.

②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리 국민투표분회의 장소 및 일시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민투표분회장은 도도부현의 구역 내 모든 개표관리자로부터 제80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국민투표분회를 열어 국민투표분회 입회인의 입회하에 그 보고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국민투표분회장은 헌법개정안에 관한 국민투표의 일부가 무효가 되어 재투표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80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는 전항의 예에 따라, 다른 부분의 보고와 함께 다시 이것을 조사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분회록 작성 및 국민투표분회록 기타 관계서류의 보존)

제92조 ① 국민투표분회장은 국민투표분회록을 만들고 국민투표분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국민투표분회 입회인과 함께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국민투표분회록은 제80조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서류와 함께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7조에 의한 소송이 재판소에 계속하지 않게 된 날과 국민투표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분회 결과 보고)

제93조 국민투표분회장은 제9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는 국민투표분회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즉시 그 결과를 국민투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민투표장(國民投票長))

제94조 ① 국민투표시에 국민투표장을 둔다.

② 국민투표장은 국민투표의 투표권을 가지는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회가 선임한 자로 한다.

③ 국민투표장은 국민투표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국민투표장은 국민투표의 투표권을 가지지 않게 된 때는 그 직을 상실한다.

(국민투표회 입회인)

제95조 제76조 규정은 국민투표회 입회인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각 개표구에서 투표인명부에 등록된 자」는 「국민투표의 투표권을 가지는 자」로,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장」으로,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장」으로, 동조 제4항 중 「또는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3인에 이르지 않게 된 때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입회인이 국민투표일 이후에 3인에 이르지 않게 된 때」는 「, 국민투표회의 기일까지 3인에 이르지 않게 된 때」로, 「개표소」는 「국민투표회」로, 「개표관리자」는 「, 국민투표장」으로, 「그 개표구의 투표인명부에 등록된 자」는 「국민투표의 투표권을 가지는 자」로, 「개표에」는 「국민투표회에」로,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 혹은 개표관리자」는 「국민투표장」으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국민투표회의 개최)

제96조 ① 국민투표회는 중앙선거관리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연다.

② 중앙선거관리회는 미리 국민투표회의 장소와 일시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민투표장은 모든 국민투표분회장으로부터 제93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국민투표회를 열어 국민투표회 입회인의 입회하에 그 보고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국민투표장은 헌법개정안에 관한 국민투표의 일부가 무효로 되어 재투표가 이루어진 경우, 제93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는 전항의 예에 따라, 다른 부분에 관한 보고와 함께 이것을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록의 작성 및 국민투표록 기타 관계서류의 보존)

제97조 ① 국민투표장은 국민투표록을 만들고 국민투표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국민투표회 입회인과 함께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국민투표록은 제93조에 따른 보고에 관한 서류와 함께 중앙선거관리회에서 제127조에 따른 소송이 재판소에 계속하지 않게 된 날과 국민투표일에서 5년을 경과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국민투표 결과의 보고 및 고시 등)

제98조 ① 국민투표장은 제9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국민투표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즉시 중앙선거관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회는 전항 또는 제135조 제6항 후단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즉시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투표수와 반대투표수, 투표총수(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의 투표수 및 반대의 투표수를 합계한 수를 말한다)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투표수가 해당 투표총수의 2분의 1을 넘었다는 내용 또는 넘지 않았다는 내용을 관보로 고시함과 동시에 총무대신을 통해 내각총리대신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즉시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중의원 의장과 참의원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준용)

제99조 제71조 제1항 본문, 제72조 본문, 제73조와 제74조 및 공직선거법 제82조 규정은 국민투표분회와 국민투표회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71조 제1항 본문 중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는」은 「국민투표분회에 관하여서는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회에 관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회는」으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7절 국민투표운동

(적용상 주의)

제100조 이 절 및 다음 절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및 정치활동의 자유 그 밖에 일본국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제100조의2 공무원(일본은행의 임원(役員)(일본은행법(1997년 법률 제89호)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원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제102조 각호에서 드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무원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정치적 행위 또는 적극적인 정치운동 혹은 정치활동 그 밖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간단히 「정치적 행위」라 한다)를 금지하는 다른 법령 규정(이하 이 조에서 「정치적 행위금지규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헌법개정 발의일부터 국민투표일 사이에 국민투표운동(헌법개정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헌법개정에 관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행위금지규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다른 정치적 행위를 동반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투표사무관계자의 국민투표운동 금지)

제101조 ①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국민투표분회장 및 국민투표장은 재직 중 그 관계구역 내에서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제61조에 따른 투표에 관하여 부재자투표관리자는 그자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특정공무원의 국민투표운동 금지)

제102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직 중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1. 중앙선거관리회의 위원과 중앙선거관리회의 서무에 종사하는 총무성의 직원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2. 국민투표 홍보협의회 사무국의 직원
3. 재판관
4. 검찰관
5.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혹은 방면(方面) 공안위원회의 위원
6. 경찰관

(공무원 등 및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한 국민투표운동의 금지)

제103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혹은 행정집행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 법률 제103호)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행정집행법인을 말한다. 제101조에서도 같다) 혹은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지방독립행정법인법(2003년 법률 제118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제111조에서도 같다)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공직선거법 제13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고(公庫)의 임직원(役職員)은 그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효과적으로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나 편익을 이용한 국민투표운동은 할 수 없다.

② 교육자(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에서 규정하는 학교 및 취학 전 어린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77호)에서 규정하는 유보연대형(幼保連帶型) 인정어린이원의 장과 교원을 말한다)는 학교의 아동, 생도 및 학생에 대한 교육상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효과적으로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나 편익을 이용한 국민투표운동은 할 수 없다.

(국민투표에 관한 방송에 대한 유의)

제104조 방송사업자(방송법(1950년 법률 제132호) 제2조 제26호에서 규정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하며 일본방송협회 및 방송대학학원(방송대학학원법(2002년 법률 제156호)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방송대학학원을 말한다. 제106조 제1항에서도 같다)을 제외한다. 다음 조에서도 같다)는 국민투표에 관한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4조 제1항의 취지에 유의한다.

(투표일전 국민투표운동을 위한 광고방송의 제한)

제105조 누구도 국민투표일전 14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국민투표일까지는 다음 조의 각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사업자의 방송설비를 사용하여 국민투표운동을 위한 광고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국민투표홍보협의회 및 정당 등에 의한 방송)

제106조 ① 국민투표홍보협의회는 양 의원의 의장이 협의하여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본방송협회 및 기간(基幹)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 제23호에서 규정하는 기간방송사업자를 말하며, 일본방송협회 및 방송대학학원을 제외한다. 제4항 및 제8항에서도 같다)의 라디오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동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중파방송 또는 동조 제18호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방송을 말한다)의 방송설비로 헌법개정안의 홍보를 위한 방송을 한다.

② 전항의 방송은 국민투표홍보협의회가 행하는 헌법개정안 및 그 요지 그 밖에 참고하여야 할 사항의 홍보 및 헌법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정당 등(1인 이상의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이 소속한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로, 양 의원의 의장이 협의하여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투표홍보협의회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도 같다)과 반대하는 정당 등이 하는 의견의 광고로 이루어진다.

③ 제1항의 방송에서 국민투표홍보협의회는 헌법개정안 및 그 요지 그 밖에 참고하여야 할 사항의 홍보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행한다.

④ 제1항의 방송에서 정당 등은 양 의원의 의장이 협의하여 규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무료로 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본방송협회 및 기간방송사업자는 정당 등이 녹음하거나 녹화한 의견을 그대로 방송하여야 한다.

⑤ 정당 등은 양 의원의 의장이 협의하여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양 의원의 의장이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항의 의견방송을 위한 녹음 또는 녹화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방송에 관하여서는 헌법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정당 등과 반대하는 정당 등 그 양쪽에게 동일한 길이의 시간 및 동등한 시간대를 부여하는 등 동등한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방송에서 의견을 방송할 수 있는 정당 등은 양 의원의 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송의 일부를 그 지명하는 단체에게 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방송 횟수 및 일시는 국민투표홍보협의회가 일본방송협회 및 해당 방송을 행하는 기간방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국민투표홍보협의회 및 정당 등에 의한 신문광고)

제107조 ① 국민투표홍보협의회는 양 의원의 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신

문에 헌법개정안의 홍보를 위한 광고를 한다.

② 전항의 광고는 국민투표홍보협의회가 행하는 헌법개정안 및 그 요지 그 밖에 참고하여야 할 사항의 홍보 및 헌법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정당 등과 반대하는 정당 등이 하는 의견 광고로 이루어진다.

③ 제1항의 광고에서 국민투표홍보협의회는 헌법개정안 및 그 요지 그 밖에 참고하여야 할 사항의 홍보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광고에서 정당 등은 양 의원의 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광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광고에 관하여서는 헌법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정당 등과 반대하는 정당 등 쌍방에 대해 동일한 크기(寸法)와 횟수를 부여하는 등 편리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광고에서 의견을 광고할 수 있는 정당 등은 양 의원의 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의 일부를 그 지명하는 단체에게 행하게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치활동의 규제와의 조정)

제108조 공직선거법 제201조의5 내지 제201조의9는 이들 조항에서 제시하는 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정당 기타 정당활동을 하는 단체가 국민투표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8절 벌칙

(조직적 다수인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09조 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직적으로 다수의 투표인에게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그 뜻을 명시하여 권유하고, 그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수로 금전 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는데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다수의 자에 대한 의견 표명의 수단으로서 통상 사용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혹은 공사(公私)의 직무를 공여하거나 그 공여를 신청 혹은 약속하고, 또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는 데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향응접대를 하거나 그 신청 혹은 약속을 한 때.
2. 조직적으로 다수의 투표인에게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그 뜻을 명시하여 권유하고, 그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수로 그자 또는 그자와 관계있는 신사와 절, 학교, 회사, 조

합, 시정촌 등에 대한 용수(用水), 소작, 채권, 기부 그 밖에 특수한 직접이해관계를 이용하여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는데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유도를 한 때.

3. 전 2호에서 드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국민투표운동을 하는 자에 대해 금전이나 물품을 교부하거나 그 교부의 뜻을 표시하거나 약속한 때, 또는 국민투표운동을 하는 자가 그 교부를 받거나, 그 교부를 요구하거나 혹은 그 교부의 뜻을 승낙한 때.

(조직적 다수인매수 및 이해유도죄인 경우의 몰수)

제110조 전조의 경우에 수수 또는 교부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직권남용에 의한 국민투표 자유방해죄)

제111조 ①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특정독립행정법인이나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중앙선거관리회의 위원이나 중앙선거관리회의 서무에 종사하는 총무성 직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국민투표홍보협의회 사무국 직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나 국민투표분회장 혹은 국민투표장이 고의로 그 직무의 집행을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국민투표운동을 하는 자를 따라다니고, 그 주거에 들어가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때는 4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행정집행법인이나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중앙선거관리회의 위원 혹은 중앙선거관리회의 서무에 종사하는 총무성 직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국민투표홍보협의회사무국의 직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또는 국민투표분회장이나 국민투표장이 투표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려고 하는 내용 또는 투표한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때는 6월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12조 중앙선거관리회의 위원이나 중앙선거관리회의 서무에 종사하는 총무성 직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국민투표분회장이나 국민투표장,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입회인(제59조 제2항에 따라 투표를 보조하여야 할 자 및 제61조 제3항에 따라 투표에 관한 기재를 하여야 할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감시자(투표소(제60조 제1항의 사전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개표소, 국민투표분회장 또는 국민투표회장을 감시하는 직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투표인이 투표한 내용을 표시한 때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표시한 사실이 허위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다.

(투표간섭죄)

제113조 ①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인의 투표에 간섭하거나 또는 투표내용을 인지하는 방법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령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에서 투표를 꺼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표사무관계자, 시설 등에 대한 폭행죄, 교란죄 등)

제114조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국민투표분회장, 국민투표장, 입회인 혹은 감시자에게 폭행 혹은 협박을 가하고, 투표소, 개표소, 국민투표분회장 혹은 국민투표회장을 교란하거나 또는 투표, 투표함 기타 관계서류(관계있는 전자적 기록매체(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에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에 관한 기록매체를 말한다)를 포함한다)를 억류, 훼손하거나 탈취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다수인의 국민투표방해죄)

제115조 ① 다수인이 집합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타인을 지휘하거나 또는 타인보다 솔선하여 세력을 도운 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한 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모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고 그 밖의 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투표소, 개표소, 국민투표분회장 또는 국민투표회장에 있어서의 흉기휴대죄)

제116조 총포, 도검, 곤봉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하기에 충분한 물건을 휴대하여 투표소, 개표소, 국민투표분회장 또는 국민투표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휴대흉기 몰수)

제117조 전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휴대한 물건을 몰수한다.

(사기등록, 허위선언죄 등)

제118조 ① 사기의 방법으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록하게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투표인명부에 등록시킬 목적으로 주민기본대장법 제22조의 신고에 관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투표인명부에 등록하게 한 자도 전항과 같다.

③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30조의5 제1항의 신청에 관하여 허위신청함으로써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시킨 자도 제1항과 동일하다.

④ 제63조 제1항의 경우에 허위 선언을 한 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위(詐僞)투표 및 투표위조, 증감죄)

제119조 ① 투표인이 아닌 자가 투표를 한 때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성명을 사칭하고 그 밖에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고자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중앙선거관리회 위원이나 중앙선거관리회 서무에 종사하는 총무성 직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국민투표홍보협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국민투표분회장이나 국민투표장,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입회인 또는 감시자가 전항의 죄를 범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리투표 등에 있어서의 기재의무위반)

제120조 ① 제59조 제2항에 따라 찬성문자 또는 반대문자 둘레에 ○표를 기재하여야 할 자로 정해진 자가 투표인이 지시하는 찬성문자 또는 반대문자 둘레에 ○표를 기재하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1조 제3항에 따라 투표에서 기재를 하여야 할 자가 투표인이 지시하는 찬성문자 또는 반대문자 둘레에 ○표를 기재하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 제61조 제3항에 따라 투표에서 기재를 하여야 할 자가 투표를 무효로 할 목적으로 투표에서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도 전항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입회인의 의무태만죄)

제121조 입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해태한 때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투표운동의 규제위반)

제122조 제101조 또는 제102조에 위반하여 국민투표운동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재자투표 경우의 벌칙 적용)

제123조 ① 제61조 제1항에 따른 투표에 대해서는 그 투표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투표관리자로, 그 투표를 기재하여야 하는 장소는 투표소로, 그 투표에 입회하여야 하는 자는 투표입회인으로, 투표인이 지시하는 찬성문자 또는 반대문자 둘레에 ○표를 기재하여야 하는 자로 정해진 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찬성문자 또는 반대문자 둘레에 ○표를 기재하여야 하는 자로 정해진 자로 간주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61조 제2항에 따른 투표에 대해서는 투표인이 투표기재 준비에 착수해서부터 투표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우편 등으로 송부하기 위해 봉투에 넣을 때까지 해당 투표에 관한 행위를 행하는 장소를 투표소로 간주하여 제113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61조 제4항에 따른 투표에 대해서는 그 투표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투표관리자로, 그 투표를 기재하여야 하는 장소는 투표소로, 그 투표에 입회하여야 하는 자는 투표입회인으로, 투표인이 지시하는 찬성문자 또는 반대문자 둘레에 ○표를 기재하여야 하는 자로 정해진 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찬성문자 또는 반대문자 둘레에 ○표를 기재하여야 하는 자로 정해진 자로 간주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61조 제7항에 따른 투표에 대해서는 선박에서 투표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 및 투표를 수신하여야 하는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투표관리자로, 투표를 기재하고 이것을 송신하여야 하는 장소와 투표를 수신하여야 하는 장소는 투표소로, 투표를 수신하여야 하는 팩시밀리 장치는 투표함으로, 선박에서 투표에 입회하여야 하는 자는 투표입회인으로, 투표인이 지시하는 찬성문자 또는 반대문자 둘레에 ○표를 기재하여야 하는 자로 정해진 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찬성문자 또는 반대문자 둘레에 ○표를 기재하여야 하는 자로 정해진 자로 간주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61조 제8항에 따른 투표에 대해서는 동항의 시설 또는 선박에서 투표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 및 투표를 수신하여야 하는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투표관리자로, 투표를 기재하고 이것을 송신하여야 하는 장소 및 투표를 수신하여야 하는 장소는 투표소로, 투표를 수신하여야 하는 팩시밀리 장치는 투표함으로, 동항의 시설 또는 선박에서 투표에 입회하여야 하는 자는 투표입회인으로, 투표인이 지시하는 찬성문자 또는 반대문자 둘레에 ○표를 기재하여야 하는 자로 정해진 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찬성문자 또는 반대문자 둘레에 ○표를 기재하여야 하는 자로 정해진 자로 간주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재외투표 경우의 벌칙 적용)

제124조 ①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재외투표인명부의 등록신청의 경유에 관한 사무,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재외투표에 관한 사무 기타 이 법률 및 이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귀속된 사무에 종사하는 재외공관의 장과 직원 및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재외투표인명부의 등록신청의 경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102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9조 제4항에 규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으로 간주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투표에 대해서는 그 투표를 관리하여야 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투표관리자(제114조에 규정하는 투표관리자에 한정한다)로, 그 투표를 기재하여야 하는 장소는 투표소로, 그 투표에 입회하여야 하는 자는 투표입회인으로, 투표인이 지시하는 찬성문자 또는 반대문자 둘레에 ○표를 기재하여야 하는 자로 정해진 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찬성문자 또는 반대문자 둘레에 ○표를 기재하여야 하는 자로 정해진 자로 간주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표에 대해서는 투표인이 투표기재 준비에 착수해서부터 투표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우편 등으로 송부하기 위해 봉투에 넣을 때까지 해당 투표에 관한 행위를 행하는 장소를 투표소로 간주하여 제113조 제1항을 적용한다.

(국외범)

제125조 제109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항,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2조(제101조 제2항 또는 제102조에 위반하여 국민투표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죄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3조의 예에 따른다.

제3장 국민투표의 효과

제126조 ① 국민투표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투표수가 제9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투표총수의 2분의 1을 넘었을 때는 해당 헌법개정에 대해 일본국헌법 제96조 제1항의 국민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제98조 제2항에 따라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투표수가 동항에서 규정하는 투표총수의 2분의 1을 넘는다는 취지를 통지받았을 때는 즉시 해당 헌법개정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취하여야 된다.

제4장 국민투표무효소송 등

제1절 국민투표무효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

제127조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제98조 제2항에 의한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동경고등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투표무효판결)

제128조 ① 전조 규정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개정안에 관한 국민투표의 결과(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투표의 수가 제9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투표총수의 2분의 1을 넘거나 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135조에서도 같다)에 변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는 재판소는 그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하여야 한다.

1. 국민투표를 관리집행하는 기관이 국민투표의 관리집행에 대해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
2. 제101조, 제102조,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대해 다수의 투표인이 일반적으로 그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
3.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투표수 또는 반대투표수의 확정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것.

② 전항 제1호의 국민투표를 관리집행하는 기관에는 국민투표홍보협의회를 포함하지 않는다.

(국민투표무효소송의 처리)

제129조 ① 제127조의 소송에 대해서는 재판소는 다른 소송과의 순서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그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대리인 그 밖에 제127조의 소송에 관여하는 자는 전항의 취지에 입각하여, 충실한 심리를 특히 신속하게 행할 수 있도록 재판소에 협력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무효소송 제기와 국민투표의 효력)

제130조 제127조의 소송제기가 있어도 헌법개정안에 관련하는 국민투표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국민투표무효소송에 대한 소송법규 적용)

제131조 제127조의 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사건소송법(1962년 법률 제139호) 제4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3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또 동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은 제127조에 따라 헌법개정안에 관한 국민투표의 무효를 구하는 복수의 청구에 관하여서만 준용한다.

(국민투표무효소송에 대한 통지 및 판결서등본 송부)

제132조 ① 제127조의 소송이 제기된 때는 재판소의 장은 그 취지를 총무대신 및 중앙선거관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소송이 계속하지 않게 된 때도 역시 동일하다.

② 제127조의 소송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때는 재판소의 장은 그 판결서의 등본을 총무대신과 중앙선거관리회 및 중의원의장과 참의원의장에 송부하여야 한다.

(헌법개정 효과발생의 정지)

제133조 ① 헌법개정이 무효로 됨에 따라 발생하는 중대한 지장을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재판소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헌법개정의 효과발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본안에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일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개정의 효과발생을 정지시키는 결정이 확정된 때는 헌법개정의 효과발생은 본안에 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진다.

④ 제1항의 결정의 관할재판소는 본안이 계속되는 재판소로 한다.

⑤ 제1항의 결정은 소명에 기반하여 한다.

⑥ 제1항의 결정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민투표무효의 고시 등)

제134조 ① 제127조 소송의 결과 헌법개정안에 관한 국민투표를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전조 제1항에 의한 헌법개정의 효과발생을 정지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혹은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했을 때는 중앙선거관리회는 즉시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총무대신을 통해 내각총리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즉시 이것을 중의원의장 및 참의원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재투표 및 경정결정

제135조 ① 제127조에 따른 소송의 결과, 헌법개정안에 관한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된 경우(제6항에 따라 헌법개정안에 관한 국민투표의 결과를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민투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② 제127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동조 규정에 따른 소송이 재판소에 계속되는 동안은 전항 규정의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의한 국민투표는 그것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60일 이후 180일 이내에서 국회가 의결한 기일에 한다.

④ 내각은 국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국민투표의 재투표기일에 관한 의안을 송부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총무대신을 경유하여, 해당 국민투표의 재투표기일을 중앙선거관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회는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국민투표의 재투표기일을 신속하게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27조 소송의 결과 헌법개정안에 관한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되었을 경우, 다시 국민투표를 하지 않고 해당 헌법개정안에 관한 국민투표의 결과를 정할 수 있을 때는 국민투표회를 열어 이것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민투표장은 국민투표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즉시 그 헌법개정안에 관한 국민투표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비용의 국고부담)

제136조 국민투표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한다.

1. 투표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투표인명부 및 투표인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2.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에 필요한 비용
3. 개표소에 필요한 비용
4. 국민투표분회 및 국민투표회에 필요한 비용
5. 투표소 등에서의 헌법개정안 등의 게시에 필요한 비용
6. 헌법개정안 홍보에 필요한 비용
7. 국민투표공보의 인쇄 및 배포에 필요한 비용
8. 국민투표 방법에 관한 주지에 필요한 비용
9. 제106조 및 제107조에 의한 방송 및 신문광고에 필요한 비용
10. 부재자 투표에 필요한 비용
11. 재외투표에 필요한 비용

(국가의 지출금산정의 기초 등)

제137조 ① 전조의 부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출금의 액수는, 국민투표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무를 하는데 필요하고 충분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지출금은 그 지출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비의 지출시기에 늦지 않도록 지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제138조 이 법률 규정에 따른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2장,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심사청구의 제한)

제139조 이 법률 규정에 따른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부작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특별구 등에 대한 적용)

제140조 ① 이 법률 중 시에 관한 규정은 특별구에 적용한다.

② 이 법률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19 제1항의 지정도시(이하 「지정도시」라 한다)의 구 및 종합구는 시로, 지정도시의 구 및 종합구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은 시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으로 간주한다.

(국민투표에 관한 기일의 국외에 있어서의 취급)

제141조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민투표에 관한 기일의 국외에 있어서의 취급(제61조 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 규정에 따른 투표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한다.

(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제142조 ①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해 총무대신, 중앙선거관리회,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국민투표분회장, 국민투표장 등에 대해서 하는 신고, 청구,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5시 사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행위는 해당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에 대해 정해져 있는 집무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의 수정에 관한 조사의 청구

2. 제4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 명부의 수정에 관한 조사의 청구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1조 제1항, 제4항, 제7항 혹은 제8항 규정에 따른 투표에 관하여 국외에서 하는 행위,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투표 또는 이 법률 혹은 이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해 재외공관의 장에 대해서 하는 행위는 정령으로 정하는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부재자투표의 시간)

제143조 ① 전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1조 제1항, 제4항, 제7항 또는 제8항 규정에 따른 투표에 관하여 부재자투표관리자 등에 대해 하는 행위(국외에서 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 가운데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해당 행위를 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이와 상이한 시각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해져 있는 시각) 사이에 할 수 있다.

② 전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 제1항, 제4항, 제7항 또는 제8항 규정에 따른 투표에 관하여 부재자투표관리자 등에 대하여 하는 행위 가운데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해 정해져 있는 집무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의 기한)

제144조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의 규정에 따라 총무대신, 중앙선거관리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하는 신고, 청구, 신청, 그 밖의 행위(내각총리대신,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총무대신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의 기한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1988년 법률 제91호) 제2조 본문 및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본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무효에 의한 재투표 특례)

제145조 헌법개정안에 관한 국민투표의 일부무효에 의한 재투표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재투표가 행해지는 구역 등에 따라 정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다.

(재외투표를 하게 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제146조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투표를 동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게 할 수 없을 때는 다시 투표하게 하지는 않는다.

(정령으로의 위임)

제147조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한 절차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국민투표사무의 촉탁)

제148조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정촌 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보조기관인 직원에게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촉탁했을 때는, 이들 직원은 충실하게 그 사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투표인에 관한 기록의 보호)

제149조 시정촌의 위탁을 받아 이루어지는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종사하고 있었던 자는 그 사무에 관하여 알 수 있었던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알리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무의 구분)

제150조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제6장 헌법개정발의를 위한 국회법의 일부 개정

제151조 생 략

부 칙

(시행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의 규정(국회법 제11장의 2의 다음에 1장을 추가하는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4조, 제6조 및 제7조 규정은 공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국회의 소집일부터, 부칙 제3조 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재외투표인명부의 등록의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제2조 ① 정령으로 정하는 날 이전에 주민기초대장에 기록된 적이 있는 자로, 그날 이후 어떤 시정촌의 주민기본대장에도 기록된 적이 없는 자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36조 제1항 중 「최종주소 소재지의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

(그자가 어떤 시정촌의 주민기본대장에도 기록된 적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그자의 신청시 본적지의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 동조 제3항 중 「해당 신청자의 최종주소 소재지의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해당 신청자가 어떤 시정촌의 주민기본대장에도 기록된 적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그자의 신청시 본적지의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자의 신청시 본적지의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로, 제38조 제1항 중 「영사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영사관을 말한다」로, 「, 최종주소 및 생년월일 (해당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한 자가 어떤 시정촌의 주민기본대장에도 기록된 적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그자의 성명, 경유영사관의 명칭 및 생년월일)」은 「및 생년월일」로 한다.

② 당분간 북방영토문제 등의 해결촉진을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1982년 법률 제85호)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북방지역에 본적을 가지는 자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36조 제1항 중 「신청시에 있어서의 그자의 본적지인 시정촌」은 「신청시에 있어서 북방영토문제 등의 해결촉진을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1982년 법률 제85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법무대신이 지명한 자가 장(長)인 시(市) 또는 정(町)」으로, 동조 제3항 중 「신청시에 있어서의 그자의 본적지인 시정촌」은 「신청시에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법무대신이 지명한 자가 장인 시 또는 정」으로 제43조 제1항 중 「시정촌 장은, 그 시정촌에 본적을 가지는 자로」는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법무대신이 지명한 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북방지역에 본적을 가지는 자로」로, 전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중 「신청시에 있어서의 그자의 본적지의 시정촌」은 「신청시에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법무대신이 지명한 자가 장인 시 또는 정」으로 한다.

제3조 삭제

(이 법률의 시행 전까지 국회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4조 제6장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국회법 제6장의 2, 제83조의4, 제86조의2, 제102조의6, 제102조의7 및 제102조의9 제2항은 동법 제68조의2에 규정하는 헌법개정원안에 대해서는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2007년 12월 28일 법률 제135호) 抄

(시행일)

제1조 이 법률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서 드는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장의 다음에 1장을 부가하는 개정규정 중 제3장의2 제2절 및 제3절에

관한 부분, 제26조의5 다음에 2조를 부가하는 개정규정 중 제26조의7에 관한 부문 및 부칙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 2008년 4월 1일

(검토)

제18조 신법의 규정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에 관한 수지(收支)보고 등의 특례제도의 실시 후 3년을 기준으로 하여, 신법의 시행상황 등을 감안해 수지보고 등의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정치단체의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부 칙 (2010년 12월 3일 법률 제65호) 抄

(시행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시행일」이라 한다)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년 8월 22일 법률 제67호) 抄

이 법률은 아동·육아지원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년 5월 31일 법률 제21호) 抄

(시행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이 법률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은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2014년 5월 30일 법률 제42호) 抄

(시행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7호) 抄

(시행일)

제1조 이 법률은 독립행정법인 통칙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법률 제66호. 이하 「통칙법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14조 제2항, 제18조 및 제30조 - 공포일

(처분 등의 효력)

제28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 법률로 인해 개정되기 전의 각각의 법률(이에 근거하는 명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했거나 하여야 하는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로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이에 근거하는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법령」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법률(이에 근거하는 정령을 포함한다)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신법령의 상당 규정에 따라 했거나 하여야 하는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로 간주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에 따라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이 법률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은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 등으로의 위임)

제30조 부칙 제3조부터 전조까지 규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인사원이 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 抄

(시행일)

제1조 이 법률은 행정불복심사법(2014년 법률 제68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년 6월 13일 법률 제70호) 抄

(시행일)
제1조 이 법률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년 6월 20일 법률 제75호)

(시행일)
1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이 법률의 시행 후 4년을 경과할 때까지 그 기일이 있는 국민투표(일본국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규정하는 국민투표를 말한다)에 관한 동법 제3조, 제22조 제1항, 제35조 및 제36조 제1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 중 「만 18세 이상」은 「만 20세 이상」으로 한다.

(법제상 조치)
3 국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신속하게 연령 만 18세 이상 만 20세 미만인 자가 국정선거에 참가할 수 있을 것 등이 되도록 국민투표의 투표권을 가지는 자의 연령과 선거권을 가지는 자의 연령의 균형 등을 감안하여, 공직선거법(1950년 법률 제100호),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 그 밖의 법령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4 국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신속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의 관점에서, 국민투표운동에 관하여 조직에 의해 행해지는 권유운동, 서명운동 및 시위운동의 공무원에 의한 기획, 주재와 지도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규제방식에 대해서 검토하여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헌법개정문제에 대한 국민투표제도에 관한 검토)
5 국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신속하게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와 헌법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제도에 관하여, 그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해

일본국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간접민주제와의 정합성확보 기타의 관점에서 더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별기양식 (제56조 관계) (略)